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3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써,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장애인복지정책과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다. 장애인 유형과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정서안정·여가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 관리·운영
- 나.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61길 81
 - 설립일자 : 2011.09.01.
 - 시설규모 : 부지 205㎡, 건물 291.28㎡(지상2층, 지하1층)
 - 시설기능
 - 식생활, 의생활, 위생·건강관리 등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기술, 정서안정·여가지원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2017. 9.1. ~ 2022.8.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 소요예산 : 250,000천원(2018년)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12조(재계약)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다운누리센터)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일반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욕구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른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운영이 관보다 바람직하고
 -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기에,
 -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김선애 (☎ 2133-7455)